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8. 30.(월) 10:0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1-38-118)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별지] 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티와이홀딩스가 2021년 5월 11일 신청한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가 SBS미디어홀딩스(주)에서 (주)티와이홀딩스로 변경되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위촉기준, 결격사유 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심사방법을 정함. 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사업자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별지는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입니다. 이어서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 내용은 (주)티와이홀딩스는 2021년 5월 11일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최다액출자자가 SBS미디어홀딩스(주) 지분 36.92%에서 지분 변동 없이 (주)티와이홀딩스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 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대상 방송사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6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위촉기준과 심사위원 결격사유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안)입니다. 기본방향은 변경 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며,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변경 승인 여부, 변경 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심사위원회 임무, 사업자의 의견청취, 심사 방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항목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변경 승인 여부 결정은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사업자 의견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승인 여부 및 승인 조건 등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오늘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9월 둘째 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셋째 주에 위원회 의결 및 사업자에게 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올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방송사의 손자회사 지분율과 방송법에서 정하는 지분율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SBS가 티와이홀딩스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증손자회사가 되어서 그것을 갖다 팔아야 되거나 지역방송과 관련이 있는 SBS 광고대행들을 처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한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SBS 자회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공정거래법이 내년부터 개정된 시행내용에 따를 경우 법적으로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인 측에서는 연내에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증손자회사가 되는데 손자회사로 만드는 것입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손자회사가 되면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은 그동안에는 증손자회사를 가지는 경우 지분을 100% 가지는 문제와 별개로, 손자회사일 경우 주식시장에 비상장되어 있는 경우 40%를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 50% 이상 가지도록

하는 부분으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이 방송법과 상충되는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결국에는 이번에 신청인이 SBS미디어홀딩스와 티와이홀딩스가 흡수합병하는 부분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이 연내에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그런 법률적인 충돌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SBS 쪽의 주장대로 그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SBS 주장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이 진행되어야겠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SBS에서는 본 승인이 9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쟁점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렸던 일정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현장에서 사업을 이런 법적 상호 모순 또는 상충되는 법의 규정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스케줄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티와이 홀딩스 기여 방안을 담은 SBS 미래발전계획을 제출한 것과 달리 SBS 종사자들의 의견이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청취할 계획입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종사자 의견을 심사위원회에서 반영해 달라고….
- 김 현 부위원장
 -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텐데 오늘 기획안은 어차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안이고, 그동안 SBS 경영진의 미래발전계획서를 받았을 것이고, 종사자들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변경 심사 추진 과정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지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서면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은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아니지요. 이 계획안으로 보면 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2주 후에 결론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셋째 주에 위원회 의결 및 사업자 통보입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종사자들의 의견청취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의견청취 방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받든 서면으로 부족하면 다시 구두로 받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제가 볼 때 이 일정대로라면 서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지금 심사위원장은 결정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위원장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고 따로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요?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는 추진 일정상에는 그것이 미비하게 반영된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참고로 작년에 할 때 심사 기간 동안에 노조위원장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쫓았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다들 동의하시니까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 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 유예되어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6월 9일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개정되었고,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4월~6월 고시안 연구반 운영을 하였으며, 7월~8월 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및 검토가 있었습니다. 고시 주요 내용입니다.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웹하드사업자,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포털 등의 기업입니다. <나>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입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방통위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입니다. 사업자는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검색제한 조치하여야 합니다. 첫째,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3페이지입니다. 둘째,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또한 사업자는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불법촬영물등 식별 시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업로드 제한을 의미합니다.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인지하면 지체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사전경고 조치 및 로드기록 보관, 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 즉 관리자가 접속하면서 남기는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입니다.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현재 TTA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방통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를 규정하였으며,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시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성능평가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평가 시 평가지표의 종류 및 통과기준 설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래 평가지표를 보시면 ① 식별가능성입니다. 식별가능성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방심위가 의결한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①의 식별가능성 여부를 반복수행한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의미합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바> 정보 제공 요청 등입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게재제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방심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와 '성능평가 수행기관(TTA)'이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방심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9월에 행정예고를 거쳐서 10월에 규제심사, 11월에 위원회 의결 후 관보게재 및 공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붙임>에 고시안 전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해당 업자들 의견을 들어봤다고 하셨지요? 사업자들의 의견은 주로 무엇입니까?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사업자들은 고시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보다 이것이 시행이 잘 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했을 때 혹시 시스템에 뭔가 영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사업자들에게 족쇄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불법촬영물은 안 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불의의 사고를 입을까, 제재를 당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ETRI, TTA, 사업자와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은 고시 제정도 중요하지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예, 맞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현재 규정상으로는 방통위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행 전에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일단 연말까지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연말쯤 이 고시가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시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도출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바꿀 계획입니까?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가 행정예고를 통해 기왕에 사업자들이 의견을 냈고 저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는지를 다시 접수하고 그다음에 그것과는 별도로 사업자나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준비하는데 저희가 혹시 지원해야 할 것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계속 회의해서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시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n번방 사건으로 통칭되는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가져왔는데 예방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제대로 못 했다고 여러 비판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남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고시안을 만들어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유통방지를 기술적 그리고 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원천 차단하는 시도는 저는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월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기능을 마련하고 신고·삭제 요청 처리하게 하고, 특히 제목필터링이나 또 문자열비교방식 등을 통해 검색 제한 조치를 한 부분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질적인 사업자 성능평가를 하고 성능평가 기준을 만드는 한국정보통신협회(TTA)와 소통을 강화해서 보다 꼼꼼하게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행령 강화에 따라 작년부터 준비한 이 고시안이 잘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이런 n번방 같은 대형 불법촬영물 사건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회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고시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서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 요청 처리와 함께 식별과 검색제한, 그리고 게재제한 조치 조항에 사업자 이행이 규제의 실효성 제고에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시가 만들어지면 시행 초기에 사업자들이 이해를 못 하거나 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무처에서는 의무사업자가 해당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계획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지난해 12월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시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이행하기보다는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불법촬영물 검색 차단에 신속성과 정리성을 제고 시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은 대책 마련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결국 한쪽 측면에서는 개인적 사적 대화방을 정부가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다른 한쪽 측면으로는 결국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상충되었던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 가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결과물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들이 내부에서만 대책이 그칠 것들이 아니라 결과들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나>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이유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지난 3월 31일 미디어렐 6개사가 영업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영업보고서를 검증하였으며,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확정된 '20년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에 따라 결합판매 지원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지상파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입니다. 이것은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미디어

랩의 결합판매 총매출액을 동 미디어랩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산정결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2.1596%, (주)에스비에스엠앤씨는 9.1496%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입니다. 이것은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원대상인 각 지역·중소방송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동 미디어랩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산정결과 지원대상 사업자(37개사) 및 각 사별 산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9월 행정예고 및 사전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말 위원회 의결 후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KOBACO와 (주)에스비에스엠앤씨의 2020년도 영업보고서 회계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해 본 결과, 2021년도 결합판매 평균비율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다만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감소로 인해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동반 감소와 또 광고주의 결합 판매 기피 등으로 결합판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사무처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완성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제5기 방통위 정책과제 중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다>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에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은 실시간TV 등록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2020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승인사업자와 동일 법인으로 운영되어 회계분리가 어려운 채널 그리고 공공채널,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등록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종교 및 성인 채널 등 평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채널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구분은 방송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해서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 내에서 공급분야 특성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겠습니다. '가' 그룹은 재허가·재승인 방송사업자와 계열 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채널로서 평가연도 직전 3년간 방송사업 매출액이 평균 300억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채널로 중소 규모 채널 그리고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채널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공급분야는 '제1분야'는 시의성 있는 경제정보나 운동경기, 스포츠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제2분야'는 오락적 예능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는 채널이고, '제3분야'는 교양, 생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평가하고,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가' 그룹, '나' 그룹 내 각각 공급분야별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각 공급분야별로 상위 2개 등급('매우우수'와 '우수' 등급 이상)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활용과 관련해서는 매년 개최되는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으로 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토록 하고, 과기정통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의 제작 역량평가 결과를 10%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우수 채널 선정 마크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자원 경쟁력 부분의 '콘텐츠인력 계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인 '콘텐츠 직무관련 교육비'를 '콘텐츠인력 교육비'로 변경하겠습니다. 직무관련성이 다양하고 콘텐츠 직무관련 교육비에 관한 자료제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산상황공표집의 교육훈련비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경쟁력'의 명칭을 한글화하는 차원에서 '과정 경쟁력'으로 변경하고, 공급분야도 'A', 'B', 'C'를 '1', '2', '3'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기본계획을 접수해 주시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사업자들로부터 평가자료를 접수하고 분석해서 12월 초에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 방통위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A', 'B', 'C'를 '1', '2', '3'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제도개선 연구반에서 'A', 'B', 'C' 부분에서 채널분야를 대외적으로 알 수 있게끔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논의과정에서 'A', 'B', 'C'를 '1', '2', '3'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장르 복합화라든지 채널의 특성상 채널이 굉장히 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교양 중심 채널', '오락 중심 채널' 이렇게 할 경우 사업자들에게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득이 'A', 'B', 'C'라는 영어표현보다는 '제1분야', '제2분야', '제3분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보충설명드리면, 제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부 한글 관련 단체에서 이왕이면 영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구분내용은 'A', 'B', 'C'나 '1', '2', '3'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A', 'B', 'C' 대신 '1', '2', '3'으로 바꾼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것은 바꾸면 되지, 평가 내용 변경이라고 해서 보고할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런데 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보고해야 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바꾸는 과정에서 공급분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시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단순히 '1', '2', '3'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목이 뭔가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애매모호한 사업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바꾼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해서 안형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5분 폐회 】